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을 구축하여 **2019년 12월 현재 서술형 237건, 사례형 18건 등 총 255건**의 생활법령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01

Q |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의 개념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 분	내 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층간소음 해결방법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02

Q | 집 옆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힘듭니다.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이 있나요?

A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아래의 소음·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 산업단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2.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 공사장의 생활 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제1호).

[단위: dB(A)]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사장의 생활 진동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제2호).

[단위: dB(A)]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03

Q | 학교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학업에 방해가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에 종합병원 주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11제4호).

● 교통 소음·진동 피해예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1.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2.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및 공동주택의 주변 도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04

Q | 자동차의 소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A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 운전자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58조제5호).

● 운행차의 정기검사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05

Q | 거주 지역 주위에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A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소음대책지역	예상 소음영향도 (단위: WECNL)	
제1종 구역	95 이상	
제2종 구역	90 이상 95 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85 이상 90 미만
	'나' 지구	80 이상 85 미만
	'다' 지구	75 이상 80 미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항공기 소음 피해예방

▶ 항공기 소음이 다음의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3항).

· 공항 인근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
· 그 밖의 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75

▶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설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종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06

Q |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어 구제를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소송 외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의 장점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종 류	정 의	처리기간
알선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 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개월
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개월
중재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개월